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75

발의연월일 : 2015. 6. 30.

발 의 자 : 김태년・김광진・도종환
박광온・박홍근・배재정
부좌현・이개호・전병헌
정세균・정진후・정청래
최동익・최민희・최재성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의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고,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통계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

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라.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

마.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할 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조사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아.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자.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에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진흥위원회의”를 “진흥위원회와 장애인분과위원회의”로 한다.

⑤ 진흥위원회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심의하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이하 “장애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애인부모, 장애인단체 대표, 특수교육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문가, 평생교육”을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을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평생교육의”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의”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진흥원 소속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3항제5호 중 “제21조의2에”를 “제21조의3에”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생 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진흥위원회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심의하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이하 “장애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애인 부모, 장애인단체 대표, 특수교육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위원회와 장애인분과위원회의----------.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② (생 략)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 ---------- ---------- ----------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진흥원 소속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 략)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제21조의3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② (생 략)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② (생 략)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	③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제21조

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및 제21조의2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시·군·구장애인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②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